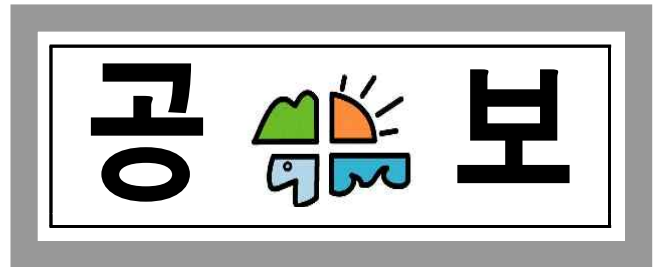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22호 2021년 4월 23일(금)

공 고

- 속초시 임시시장 개설 공고 2

입법예고

-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9
-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8

속초시 임시시장 개설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제3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6.

속 초 시 장

■ 임시시장 개설 개요

1. 시 장 명 : 사회적 거리두기 숲속마켓
2. 개 설 자 : 속초시장
3. 개설지역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36-1 일원
4. 시장면적(㎡) : 29,028㎡
5. 개설기간 : 2021. 4월 ~ 11월(총 10회)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등

3.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청취 재공고·열람 범위 확대(시행일 2021. 7. 13.)(안 제8조, 제9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의2)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사무 명확화(안 제26조, 제51조, 제53조)

라. 경관지구 건폐율 단서조항 신설(안 제35조)

마.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주유소 등 건축 허용(별표 3)

바. 일반주거지역내 판매시설 일부 허용(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사. 그 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불일치하는 문구 수정
(안 제13조, 제19조의2, 제26조, 제26조의 2, 제29조의2, 제37조, 제48조, 제57조의2, 제58조의2,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1부터 별표 12까지, 별표 14부터 별표 18까지, 별표 20부터 별표 22까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4일까지 속초시장(참조 : 건설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등

1) 전자우편(이메일) : qhistoryp@korea.kr

2) 주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도시과(도시계획팀) / 우) 24826

3) 연락처 및 팩스 : 033-639-2447(fax 033-639-2485)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033-639-24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결과 재공고·열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차목·타목 및 파목”을 “거목·더목 및 리목”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장관리방안”을 각각 “성장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안”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6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의2 중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35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37조 본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하”를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제2호 중 “안의”를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제5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3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1부터 별표 12까지, 별표 14부터 별표 18까지, 별표 20부터 별표 2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4층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제1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시장이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별표 3 제13호 및 제14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4. 별표3 제13호 및 제14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만 해당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농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으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직업훈련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 15
제1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
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관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1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 시설
- 1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1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1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20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 2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2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 2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2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2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시설
- 2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3호 및 4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2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으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_중 같은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중 관할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u>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u>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 <u>법 제28조제5항</u> ----- ----- ----- ----- ----- ----- -----.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u>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u>시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결과 재공고·열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u>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u>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 ----- -----

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과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생략)

제19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현행과 같음)

3 .

----- 거목·더
목 및 러목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삭제>

②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
-----.

1. (생략)

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나. (생략)

다.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육상골재는 제외한다)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

1. (현행과 같음)

2. -----
성장관리계획

-

③ -----
성장관리계획-----
-----.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1. -----

가.·나. (현행과 같음)

<삭제>

2.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6호-----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및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 6. (생략)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

획위원회 심의 제외) -----

-----.

1 .

----- 「 주택 법 」 제 15 조

2 .

----- 「 주택 법 」 제 15 조

3. ~ 6.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

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
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
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
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
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
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6조

-,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①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 40퍼센
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
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②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
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
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은 해
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
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의 규모)

특화경관지구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8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다. (생략)

2. (생략)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

-----.

제48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물
환경보전법」 -----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 6. (생략)

제53조(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 6. (현행과 같음)

제53조(건폐율 완화) ① -----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생략)

④ (생략)

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
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생략)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
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
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
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
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때에
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생략)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
축물 :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
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 제
4항-----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
한 용적률의 완화) -----

-----.

1. (현행과 같음)

2 .

----- 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급한 비율

제57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① (생략)

②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8. (생략)

제58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의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 2. (생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

제57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8.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 계 법 령 발 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시행일 2021. 7. 13.>

① ~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 ⑧ (생략)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 7. (생략)

③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 ~ ④ (생략)

⑤ 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 2. (생략)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생략)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략)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 11) (생략)

라. ~ 마. (생략)

2. (생략)

② ~ ⑦ (생략)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 10. (생략)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생략)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생략)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 ~ ③ (생략)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 (생략)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 다. (생략)

2. (생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③ (생략)

④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생략)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 6. (생략)

⑤ (생략)

⑥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 4. (생략)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생략)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생략)

6. ~ 7. (생략)

⑦ ~ ⑧ (생략)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⑥ (생략)

⑦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생략)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⑧ ~ ⑩ (생략)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 2. (생략)

⑫ (생략)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 ⑤ (생략)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⑦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생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 자. (생략)

○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다.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 바. (생략)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 마.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생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 자. (생략)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 머. (생략)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 관련)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 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 바. (생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 자. (생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 더. (생략)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 관련)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 마. (생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 자. (생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 파. (생략)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 더. (생략)

○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 관련)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 아.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 (생략)

○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 관련)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 거. (생략)

○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생략)

○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 바. (생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 자. (생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 파.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마. (생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

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 거. (생략)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아. (생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 러.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자. (생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파. (생략)

○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 거. (생략)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 아.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 마. (생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 더. (생략)

○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 다. (생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 바.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 자. (생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 하. (생략)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 관련)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 바. (생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아. ~ 자. (생략)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 관련)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차. (생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
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 거. (생략)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리모델링 이후 전국 최고수준의 전문공연장 기능을 확충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조문 추가 등을 통해 원활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 용어의 정의 “단체관람, 기본액, 어린이, 학생, 군인, 어른” 삭제 및 “관람권” 추가 (안 제2조)
- 나.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의 제한 중 “상행위, 특정종교 포교 등” 조항 신설 (안 제4조)
- 다. 사용시간 및 사용료 현실화 조정 (안 제7조)
 - 1) 리모델링 이전 기본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 2) 휴일 개최, 유료 대관공연 등에 대한 사용료 가산기준 조정

- 3) 사용허가시간 초과분에 대한 추가사용료 납부조항 신설
- 라. 기간내 미납시 사용신청 자동취소 신설 (안 제9조)
- 마. 사용자 설치 시설물 미철거시 원상복구 조문 정비 (안 제11조)
- 바. 사용허가 양도 및 전대금지 삭제조항 부활 (안 제13조)
- 사. 회관 자체 기획공연에 대해 관람료 징수규정 보완 (안 제14조)
- 아. 관람료 환불 및 할인대상자 조항 신설 (안 제14조의 2)
- 1) 회관 주최 기획공연 관람료 환불규정 마련
 - 2) 할인대상자 및 할인율 신설, 특별 및 추가할인 조문 추가
- 자. 공연장 입장제한자 보완 (안 제15조)
- 1) 타인에게 방해가 될 동물 등 : 단, 시각장애인 보조견 제외
 - 2)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전시 질서유지 위해 인정되는 자
- 차. 안내요원 관리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 (안 제17조)
- 카.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우)24821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실

- 연락처: 전화(033-639-2638), 팩스(033-631-733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팀(☎033-639-26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문화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기본시설인 대공연장·소강당·전시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 회관의 시설일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물의 게시·영화촬영·공연·전람·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집회 및 행사

③ 사용 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④ 삭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상행위, 특정종교 포교활동 등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기타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허가의 취소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을 위반할 때
2. 제4조 및 제9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제6조(허가기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연극 및 창극 : 6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음 악 회 : 3일 이내
5. 국 악 : 3일 이내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 시 회 : 10일 이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기본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 동계(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 ② 행사용 대관시는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 ③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의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④ 공연연습 및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⑥ 사용 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⑦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연장 초과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감면)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납시 자동 취소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제10조 <삭제 1999.09.14>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회관 시설물 및 각종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회관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제14조(관람료) ①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회관 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2(관람료의 감면 등) ① 회관이 자체 기획하는 공연의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취소 사유로 관람료의 환불 요청시 해당 공연 전일 18시까지 예매금액의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다만, 예매마감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회관 자체 기획공연, 전시에 한하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자에 한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시장은 회관 자체 기획공연 중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에 대해 대상 및 요율을 정하여 특별감면을 할 수 있다. 단, 2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위 감면 대상자 외에 타 법률의 제정 등으로 추가 감면 대상자가 생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건(동물 등)을 휴대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공연·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안내요원 관리 운영 등) ① 공연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내요원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안내요원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속초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공연	행사	
공연장 (대강당)	오전 (09:00~12:00)	100,000	150,000	■ 행사에 공연이 포함된 경우 행사로 본다.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단, 전시실은 1일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유료입장 시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단, 공연 당일은 제외) ■ 사전설치를 위한 전시실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 50%로 한다. (단, 당일 설치는 제외) ■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오후 (13:00~17:00)	150,000	200,000	
	야간 (18:00~22:00)	200,000	250,000	
소회의실 (소강당)	오전 (09:00~12:00)	30,000		
	오후 (13:00~17:00)	40,000		
	야간 (18:00~22:00)	50,000		
전시실 (부속동)	1일	50,000		

속초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무대설비	음향반사판		1일	70,000	
	피아노	대공연장	1일	40,000	■ 조율비 별도부담
		소강당	1일	20,000	
	덧마루		1일	40,000	■ 사용자 설치 및 철거
	연주용 의자, 보면대 (기본 각 30EA)		1일	30,000 (추가 각 10EA : 10,000)	
	댄스플로어(무용매트)		1일	50,000	
냉난방설비	냉방			기준사용료*50%	
	난방		시간당	연료시가*사용량	
음향	메인스피커(콘솔포함)		1일	100,000	
	모니터 스피커		1대/1일	10,000	
	무선마이크		1대/1일	20,000	■ 소강당 50% 경감
	유선마이크 / D·I 박스		1대/1일	5,000	
영상	빔프로젝터 (스크린 포함)		1대/1일	100,000	■ 고정식 ■ 소강당 50% 경감
	자막용 LED 전광판 (기본 131인치 * 2EA)		1일	100,000	■ 고정식
조명	기본조명		1회	40,000	■ 무대상부 퍼넬 및 쉐딩 12 조명
	Follow Spot		1대/1일	30,000	
	포그 머신	Unique/ Hazer	1대/1일	15,000	■ 포그머신 액 포함
		MDG	1대/1일	30,000	
	무빙 라이트 (LED)	SPOT	1대/1일	30,000	
		WASH	1대/1일	10,000	
	PAR 64 라이트		1대/1일	1,000	
	PAR 46 라이트		1조/1일	4,000	■ 1조(8EA)
	Ellipsoidal - source 4		1대/1일	2,000	
	Strobe		1대/1일	1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오후, 야간 중 한번이라도 사용 시 1일로 간주한다.

* 장비 운용에 따른 인력 및 부대설비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리모델링 이후 전국 최고수준의 전문공연장 기능을 확충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조문 추가 등을 통해 원활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증금 조문 삭제 (안 제5조)

나. 관람권 검인 삭제 및 기획공연 조문 삽입 (안 제8조)

1) 관람권 검인 및 유·무료발행권 조항 삭제

2) 회관 자체 기획공연 초청·계약·매표관리·관람료 징수 신설

다. 휴관일 추가 (안 제9조)

1) “설날·추석날 (연휴 포함), 매주 월요일, 기타 시장이 정하는 날” 추가

라. 보증금 반환 조문 삭제 (안 제11조)

마. 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세칙 제정 신설 (안 제13조)

바. 불필요한 별지 삭제 및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우)24821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실
- 연락처: 전화(033-639-2638), 팩스(033-631-733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팀(☎033-639-26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공연·전시·행사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관한다.

1. 국가 또는 강원도와 속초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4. 청소년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 전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삭제
3. 삭제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13호서식)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시는 "별지 제2호서식", 사용불가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용신청 일정이 상호 경합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2. 개인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사용실적이 많은 자 우선
3. 단체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정기 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 우선
4. 단체와 개인간 경합일 경우 단체 우선

제5조(사용료 납부)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 승인서를 통지 받은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 10일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강원도 및 속초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전시·공연

나. 위 가목의 행사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시행케 하는 행사

2. 일부감면(대·소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

가. 속초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 및 공연으로서 지역문화 창달에 현저히 기여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비영리 단체의 공연 및 전시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문화회관 사용허가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한다.

제8조(관람료)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기획공연의 초청·계약·매포관리·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휴관)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시설보수와 기기 점검을 위해 동계 및 하계 각 30일 범위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0조(홍보물 게첨)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부책비치) 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문서 또는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회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
2. 삭제
3. 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대장(별지 제5호서식)
4. 회관 사용 실적 현황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결	담	당	자	담	당	과	장
재							

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공				연				명																																																															
목적				및				내용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연		락		번		호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사 용 시 설	기			본			시			설			1.대			공			연			장			2.소			강			당			3.전			시			실																															
	부			대			시			설			별지 참조																																																										
사 용 시 간	준			비			시			간			년			월			일			시			분			에서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분			까지																																																							
	년			월			일			시			분			에서																																																							
공			연			시			간			년			월			일			시			분			까지			공			연			회			수			회																													
출				석				및				참				석				예				정				인				원				출				연				진				외				명																			
관				람				료				유				료				()				전				산				예				매				일				반				현				장				예				매				일				반			
무				료				()				학				생				기				타				학				생				기				타																															
장 치 및 연 습	무			대			장			치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무			대			연			습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스텝 회의	※ 대공연장 대관 신청시 원활한 공연(행사) 진행을 위해 속초문화예술회관에 방문하시어 문화예술회관 감독들과 스텝 회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진행에 체크 부탁드립니다.
	☐ 년 월 일 시 ☐ 유 선 진 행(033-639-2560)
행사 진행	☐ 진행요원 있음 ☐ 진행요원 없음
추 가 사 항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

신 청 인	단체(공연자) 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주 소							
공 연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								
구 분	종 류		단 가	수 량	회 수	기 간	금 액	비 고
무 대 설 비	음향반사판		1일 70천원	식	일	~		
	피아노	대공연장	1일 40천원	대	일	~		■ 조율비 별도부담
		소강당	1일 20천원	대	일	~		
	덧마루		1일 40천원	식	일	~		■ 사용자 설치 및 철거 ■ 연주용 의자 및 보면대 추가 10세트당 10천원
	연주용 의자, 보면대 (기본 각 30EA)		1일 30천원	개	일	~		
	댄스플로어 (무용매트)		1일 50천원	식	일			
냉 난방기	냉방			식	일	~		■ 기본사용료*50%
	난방			식	일	~		■ 연료시가*사용량
음 향	메인스피커(콘솔포함)		1일 100천원	식	일	~		
	모니터 스피커		1일1대 10천원	대	일	~		
	무선마이크		1일1대 20천원	대	일	~		
	유선마이크 / D·I 박스		1일1대 5천원	식	일	~		
영 상	빔프로젝터 (스크린포함 / 20,000Lumens)		1일1대 100천원	대	일	~		■ 고정식
	자막용 LED 전광판 (기본 131인치 * 2EA)		1일 100천원	대	일	~		

뒷장에 계속

구 분	종 류	단 가	수 량	회 수	기 간	금 액	비 고
조 명	기본조명	1회 40천원		회	~		
	Follow Spot	1일1대 30천원	대	일	~		
	포그 머신	Unique/ Hazer	1일1대 15천원	대	일	~	■ 포그머신 액 포함
		MDG	1일1대 30천원	대	일	~	
	무빙 라이트	SPOT	1일1대 30천원	대	일	~	
		WASH	1일1대 10천원	대	일	~	
	PAR 64 라이트	1일1대 1천원	대	일	~		
	PAR 46 라이트	1일1조 4천원	대	일	~		■ 1조(8EA)
	Ellipsoidal - source 4	1일1대 2천원	대	일			
	Strobe	1일1대 10천원	대	일			
기 타							
합 계							
총 합 계							

1.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겠습니다.

3. 입금처 : / 예금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속초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 준수사항

- ☐ 사용자는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제한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공연 또는 행사 중 상행위, 특정종교 포교 등 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합니다.
- ☐ 기본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가능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부대시설 사용 등 자세한 사항은 조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사용 10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내 미납시 자동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됩니다.
- ☐ 특별한 설비의 설치를 승인받은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일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관련법에 따라 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각종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고,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 사용자는 대관공연·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등 부착 및 설치할 경우 사전에 문화예술 회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 더불어,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반입한 물품의 분실 또는 파손 등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만일 사용허가 승인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20일 전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시물은 사용신청 시 작품목록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용자는 발생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 처리 등을 통해 허가받은 시설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공연장 내에는 꽃다발 및 음식물 등을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 ☐ 상기사항 이외에도 속초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추가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수사항을 어길 시 사용허가 취소 및 향후 사용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허가번호 : 제 호

귀하

귀하(단체)의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대관) 신청 건에 대하여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허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연(전시) 행 사 명						
사 용 자						
사용자주소						
사용허가 내 용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공연횟수	회					
사 용 료	합 계	원	기본시설 사 용 료	원	부대시설 사 용 료	원

- 허가조건 : 1.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속초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조건서

- ☐ 사용자는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제한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 ☐ 공연 또는 행사 중 상행위, 특정종교 포교 등 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합니다.
- ☐ 기본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가능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부대시설 사용 등 자세한 사항은 조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사용 10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내 미납시 자동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됩니다.
- ☐ 특별한 설비의 설치를 승인받은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일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관련법에 따라 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각종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고,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 사용자는 대관공연·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등 부착 및 설치할 경우 사전에 문화예술회관과 협의 하여야 합니다.
- ☐ 더불어,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반입한 물품의 분실 또는 파손 등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만일 사용허가 승인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20일 전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시물은 사용신청 시 작품목록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용자는 발생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 처리 등을 통해 허가받은 시설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공연장 내에는 꽃다발 및 음식물 등을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 ☐ 상기사항 이외에도 속초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추가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수사항을 어길 시 사용허가 취소 및 향후 사용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허가조건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겠습니다.

20 . . .

공연(행사) 단체(개인)명 :

(인)

속초시장 귀하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불가 통지서

귀하

귀하(귀단체)의 속초문화예술회관()사용(대관) 신청 건에 대하여 속초문화예술 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이 불가함을 통지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전시) 행 사 명	
사 용 자	
사용자 주소	
사용불가 사유 1. 2. 3.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대장

일련 번호	사용허가 일 자	사 용 기 간		사용목적	사 용 자		사용료	비고
		일자	시간		주 소	성명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주 소 :
성명(단체명) :

2. 20 년 월 일자로 사용허가 받은 귀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

나.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용일자			
사용시설			
부대시설			
기 타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속 초 시 장 귀하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공연(전시) 행 사 명							
사 용 자			생년월일				
사용자주소				전화번호			
공연(전시)등 내 용							
사용기간 및 시 간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출연자 및 참석 예 정 인 원 수	
사용시설	기본설비						
	부대설비						
감면요구액	원(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인)

첨부 감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끝.

속 초 시 장 귀하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속 초 시 장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법률 공포(2020.1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변경

-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촉진(안 제2조~안 제4조)

-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대한 규정 (안 제2조)
-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 (안 제3조)
-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안 제4조)

- 다.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12조)
- 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세부화 (안 제13조)
- 마.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교부 및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사. 원인자 부담의 근거규정 변경 (안 제15조)
- 아.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 마련 (안 제16조)
- 자.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 신설 (안 제17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민원토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 1) 전자우편(이메일) : jhgogom@korea.kr
- 2)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 3) 팩 스 : 033-639-2385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3-639-38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속초시에 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소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주소정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주소정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주소정보 등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속초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은 수탁자가 주소정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1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 등) ① 시장은 영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 시기 등을 안내해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려는 사람에게 주

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16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주소정보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속초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앞 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속 초 시

60mm×90mm [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속초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토지·
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